



서울교육대학교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서울교육대학교-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업무협약서

서울교육대학교와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이하 본 협약에서 양자를 통칭하여 “양 기관”이라 한다.)는 교원의 연구역량 및 전문성 제고와 미래지향적 교원 양성을 통한 교육의 본질 회복과 올바른 교육력 제고를 위해 다음과 같이 전략적 이해·협력에 대한 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본 협약은 양 기관이 지향하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양 기관의 다양한 자원을 적절히 제공·활용하고 전략적인 이해·협력을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책임) 양 기관은 협약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책임이 있다.

제3조(협력 분야) 양 기관은 다음 사항에 대해 상호 협력한다.

1. 미래 교육을 위한 공동 협력 및 행사 추진

- 예비교사 및 현장교사를 위한 교사 교육 발전 협력 추진
- 현장 교육을 위한 교사 중심 대회 추진

2. 현장교육 연구 활성화

- 우수 교육자료 및 사례 발굴·확대, 자료 제공 등을 통한 연구 활성화

3. 양 기관 교원연수 활성화 및 연계성 강화

- 양 기관 연수 프로그램 상호 공유 및 활용
-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교원 연수 프로그램 운영 지원 등

4. 교육과정 및 비교과 교육과정 운영

- 초·중등 및 대학 교육과정 개선 및 운영
- 비교과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 등

5. 교육현안 및 미래교육 연구

- 양 기관 연구 협력을 통한 당면 교육현안 해결 및 선도적 미래교육 제시

6. 기타 양 기관 합의를 통해 추가로 정하는 공동 협력 사항

제4조(효력발생 및 유효기간) 본 협약은 양 기관의 대표가 합의 서명한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하며 협약기간은 일방의 별도 통보가 없는 한 계속 유효한 것으로 한다.

제5조(협약의 변경·해지) ① 양 기관은 상호 협의에 따라 본 협약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은 서면에 의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어느 일방은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 경우 해지하고자 하는 당사자는 최소 30일 전에 서면으로 그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1. 양 기관이 협약 해지에 합의한 경우
2. 일방 당사자가 협약의 내용을 위반하거나 의무를 불이행한 경우
3. 기관 내부 사정으로 협약 유지가 곤란한 경우
4. 협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사정이 발생한 경우

제6조(협의조정) 본 협약서의 해석상 이의가 있거나, 추진 과정에서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조정·결정한다.

제7조(비밀유지) 양 기관은 본 협약과 관련된 활동을 통하여 알게 된 상대 기관의 비밀사항을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하며, 이 의무는 협약 종료 후에도 유효하다.

제8조(기타) 본 협약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은 양 기관이 상호 합의하여 결정한다.

제9조(보관) 본 협약서의 증명을 위하여 협약서를 2부 작성하고, 양 기관이 서명·날인하여 각각 1부씩 보관한다.

2025. 8. 28.

서울교육대학교

총장 장 신 호

장 신 호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회장 강 주 호

강주호